

현 장 설 명 서

- 산학협력관 옥상 방수공사 -

2023. 05.

동국대학교 BMC종합행정실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산학협력관 옥상 방수공사

나. 공사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산학협력관

다. 공사내용

- 1) 폴리우레아 시공(하도, 중도, 상도 작업 진행 필수, 바닥, 벽체, 패드하부 전면 시공)
- 2) 데크 철거
- 3) 일부 구간 타일 철거
- 4) 트렌치 훼손부위 복구 및 바탕처리
- 5) 배수구 보수
- 6) 기존 누수 호실 천정 상부 주입시공(아크릴계)

라. 공사기간 : 착공일 기준 21일 이내(2023.06.23.까지 준공)

※ 착공일은 발주처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2. 견적 작성 기준

가. 공사비 산출은 우리 대학의 현장여건에 따르며, 공사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변경은 없다.

나. 공사범위 및 견적 작성 기준은 현장설명서(질의응답문서 포함),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포함하여, 현장설명서의 내용은 설계도서에 우선한다.

다. 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은 견적에 반영한다.

라. 설계도서(도면과 시방서)간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질의응답을 통하여 우리대학으로부터 명확한 공사방법 및 한계를 제시받아 견적에 반영하여 한다.

만약 질의회신 내용에 언급이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사는 견적 시 상급사양(또는 상급공법)으로 견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 중에 설계도서의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상급사양(또는 상급공법)으로 시공하며,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요청할 수 없다.

마. 입찰 전 공사비 산정은 반드시 제공된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를 근거로 현장확인 및 실측을 통해 산정하도록 하며,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사여건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별도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바.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사. 공사기간 중 사용된 가설전력 및 공사용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필요 시 별도 공사용 수전을 설치하며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함)

아. 사용 전 검사 등의 공과금은 시공자부담으로 포함한다.

자. 아래 공사특수조건 및 동국대학교 공사일반조건에 명기된 사항들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는 모두 견적에 반영한다.

차. 관계법령에 따른 간접경비는 반드시 최소기준 이상 반영한다.

카. 견적 기간 중 질의응답에 관련된 사항은 메일 전송하며, 이에 대한 답변사항은 현장설 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타. 질의내용 이외에 우리대학이 판단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신내용에 포함되며, 이는 반드시 견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사특수조건

가. 건축 및 설비와 연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 승인 득한 후에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민원 또는 공사진행 및 준공을 위해 시공사와 관련된 모든 대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관협의 및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 현장의 각종 안전시설 및 가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관련 법규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라. 현장 대리인은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원활한 현장 운영을 위하여 인원배치 계획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에 요구가 있을 시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착공계 제출 시 조직도와 관련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국민연금 납부확 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착공 후 인원배치 계획을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대학은 착공계 승인을 불허하며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바.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기되어 있지 않는 자재는 KS제품이나 동등 이상 제품과 가 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사. 본 공사 시행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에 있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발주처에 문의해야 하며, 견적오류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아. 물량증가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사범위 외의 감독관이 추가공사를 지 시한 사항에 대하여만 추가공사비를 인정한다.

자.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재료 중 발주자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차. 소음 진동 및 먼지가 발생하는 직업 일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기존시설물 및 민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공사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카. 본교는 계약사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원도급자는 본교의 기성금과 관계없이 하 도급 기성 및 자재비, 인건비, 각종 경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업체에 한정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4. 공사일반조건

- 가. 시공자는 계약과 동시에 발주처로 착공계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공정표, 인력배치계획, 가설계획, 재해예방대책, 자재수급계획표 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시공사는 계약 이후 발주처로 공사일보(매일 오전 9시)와 주 1회 공정회의록을 제출한다.
- 다. 시공 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주변시설(전기, 급수, 도시가스) 등의 정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3일 전)에 미리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확인받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라.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는 시공사의 책임 하에 해결한다.
- 마. 시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에 필요한 각종 측량 및 먹줄 놓기를 실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 바. 시공사는 공사 중 설계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우리대학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사. 설계 변경 시 단가 적용은 계약단가에 의하며 계약내역에 없는 단가는 공인된 물가정보지의 가격에 설계예정가격 대비 총 계약금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아. 시공 단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되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일괄재 도급은 불허하고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자. 시공사는 공사 진도별 진척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촬영(일 2회 이상)을 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착공전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사진자료를 우리대학으로 제출한다.

5. 하자처리기준

가. 시공사는 준공과 동시에 하자보수보증증권(서울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나. 하자 발생 시 시공사는 신속하게 하자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일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1) 하자접수 : 유선통보 후 2일(48시간) 이내 현장 확인.
- 2) 처리계획 : 현장 확인 후 1일(24시간) 이내 처리계획 송부
- 3) 하자처리 : 유선통보 후 5일 이내 하자보수 착수
유선통보 후 7일 이내 하자보수 완료

다. 유선 연락 후 7일 이내 하자의 처리가 되지 않을 시 다음 기준으로 처리한다.

- 1) 하자 접수 후 착수했을 경우 : 시공사에서 지연사유 및 일정에 대한 공문 제출
- 2) 유선 통보 후 7일 이내 하자보수 착수하지 않을 경우 :
 - 가) 내용증명 1차 발송 (처리기한 : 내용증명 접수 후 7일) → 시공사
 - 나) 내용증명 2차 발송 (처리기한 : 내용증명 접수 후 5일) → 시공사 및 증권발급 기관
 - 다) 하자보수 선 처리 후 비용 청구(최초 유선연락으로부터 30일) → 증권발급기관

라.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는 유선연락통보 후 7일 이내에 우리대학으로 문서 접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의 제기 없이 보수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하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함.

- 특기시방서 -

1. 옥상 전체 바닥 및 벽체 면 정리 작업을 시행한다.
 - 가. 지장물 및 현장에 따른 철거 및 바탕처리 진행(도면 및 과업지시서 첨부)
 - 나. 상기 작업 완료 후 청소 및 방수 작업 전처리 작업을 시행한다.

2. 공사 범위 내 바닥 및 벽체 면에 프라이머(하도) 작업을 시행한다.
 - 가. 롤러, 붓을 이용하여 바닥면 프라이머 코팅 하도 작업 시행
 - 나. 방수자재 지정제품 사용

3. 공사 범위 내 바닥 및 벽체 면에 우레탄 중도 작업을 시행한다.
 - 가. 우레탄 규격 : 1mm(KS F 3211)
 - 나. 고경질 우레탄을 바닥면에 고르게 펴준 후 일정한 두께 도막 작업을 진행하여 파라펫 벽면은 흘러 내리지 않는 수직용 우레탄을 사용한다.

4. 공사 범위 내 바닥 및 벽체 면에 폴리우레아 작업을 시행한다.
 - 가. 폴리우레아 규격 : 3mm(KS F 4922)
 - 나. 폴리우레아를 스프레이건 또는 롤러 등으로 평평하게 도막 형성 작업을 실시한다.

5. 공사 범위 내 바닥 및 벽체 면에 상도작업을 시행한다.
 - 가. 고경질, UV코팅 작업을 실시한다.
 - 나. 햇빛과 비, 눈 등에 폴리우레아 도막을 보호하기 위해 폴리우레아를 코팅하는 것으로 스프레이건 또는 롤러 등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6. 공사 진행 시 실외기, 배수로 등에 먼지나 공사폐기물에 피해가 없도록 비닐로 보양한다.

7. 모든 공사 시공 시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처리 한다.

8. 민원 발생 시 공사 중단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9.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안전관리비 증빙으로 활용 가능)
10. 모든 자재는 샘플북을 현장에 구비하고, 발주처 담당자 현장 협의 후 승인을 득한 후에 자재 발주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1. 모든 제품은 KS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12. 준공청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가. 공사완료 후 내·외부 공간에 대한 준공청소를 실시하고, 발주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관련 사진대지 제출 필수) 준공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추가적인 청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일정을 수립하고 청소 실시한다.
 - 나.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당일 교외로 반출하고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다.